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6. 19

나. 제 출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9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9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00. 7. 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청소사업소장 정광열)

제안이유

○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(대장동폐기물소각시설) 설치·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직·간접영향권(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)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시의원,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되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2가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을 포기하여 시의회에서 시의원 4인을 선정 요구하고자 함

주요내용

○ 선정요구인원 : 4인(시의원 : 4인)

○ 근거법규
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
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대표선정(4인)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주민협의체대표 선정

성 명	생년월일	성별	주요경력	주 소	연락처	비고
		남	건설교통위원회 위원			
		"	"			
		"	"			
		"	기획재정위원회 위원			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

의안번호	제341호
의결년월일	2000. 7. 6 (제79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6. 19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(대장동폐기물소각시설) 설치·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직·간접영향권(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)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시의원,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되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2가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을 포기하여 시의회에서 시의원 4인을 선정 요구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선정요구인원 : 4인(시의원 : 4인)

○ 근거법규
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
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

주민협의체 선정 규정 및 임무

1. 주변현황

○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 300M 이내 주택 2세대 존치

2. 대표선정기준

○ 선정인원 : 6인(시의원 : 4인 전문가 : 2인)

○ 임 기 :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

3. 구성방법

○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여야 하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2가구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을 포기하여 시의원 4인과 전문가 2인으로 협의체 구성

4. 임 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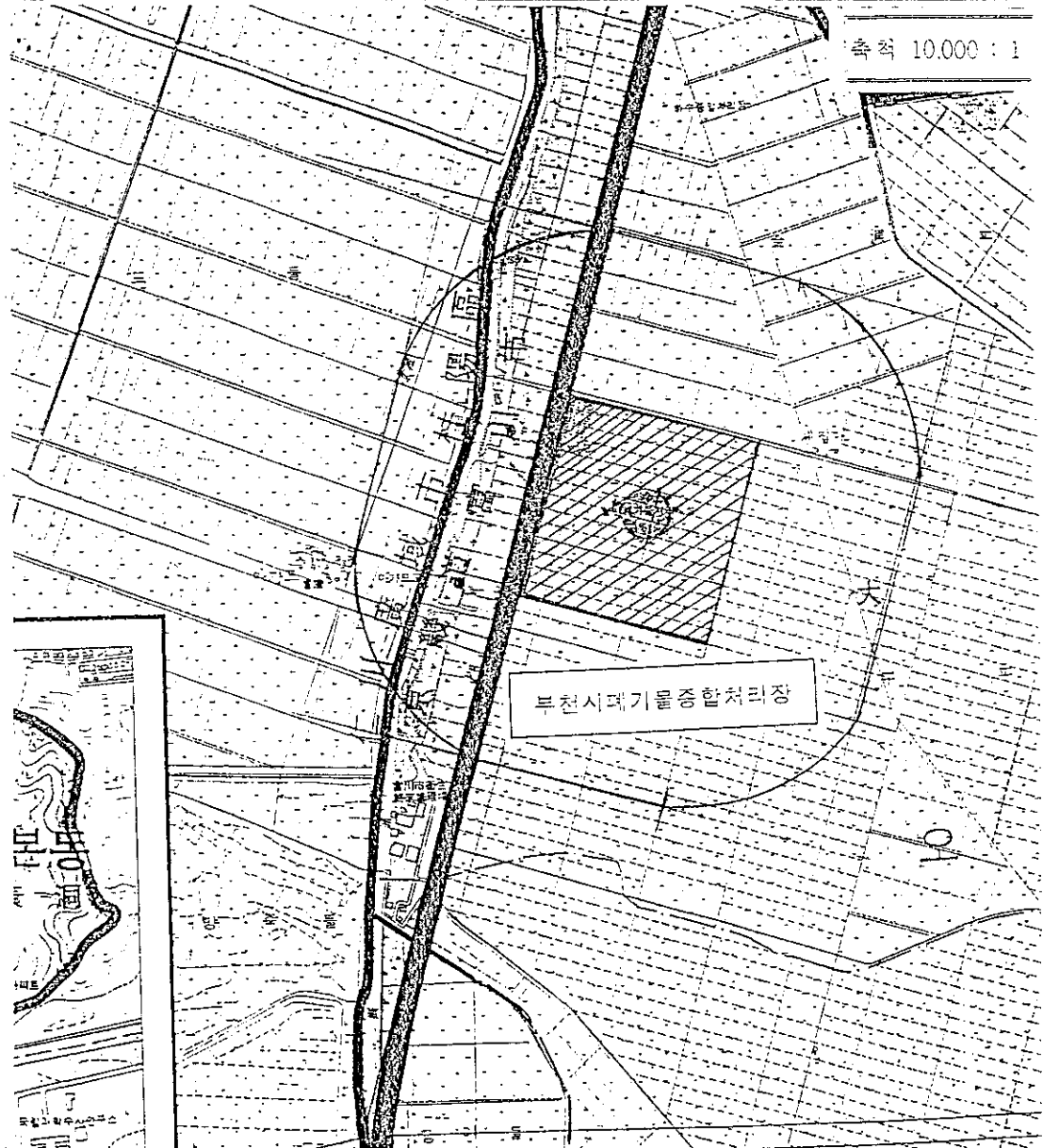
○ 선정된 주민협의체 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권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음

5. 폐기물소각시설주변지역 거주현황 : 별첨 1

6. 주민협의체 대표 선정포기서 : 별첨 2

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(대장동소각장) 주변 현황도

(축적 10,000 : 1)



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포기서

주 소 :

성 명 : 주민등록번호

상기 본인은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
등에관한조례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(대장동
폐기물종합처리시설) 주변영향지역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됨을
포기 합니다.

2000년 5월 10 일

위 본인 성 명 :

부천시 의회의장 귀하

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포기서

주 소 :

성 명 주민등록번호:(

상기 본인은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자원
등에관한조례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(대장동
폐기물종합처리시설) 주변영향지역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됨을
포기 합니다.

2000년 5월 9 일

위 본인 성 명 :

부천시 의회의장 귀하